

# Deloitte.

## 세무관세뉴스

2023년 12월



## 주목할 만한 사항:

### 법인소득세 ("CIT")

- 확장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CIT 인센티브
- 납부한 수입관세는 손금산입 가능함
- 투자 프로젝트를 통해 자본을 출자하는 회사는 해당 프로젝트의 CIT 인센티브 권리와 의무를 상속받을 수 있음
- 연체이자 비용은 손금산입 가능함

### 간접세 ("VAT")

- 후원금 수령시 계산서 발행

### 개인소득세 ("PIT")

-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에 대한 PIT
- 수수료에 대한 PIT

### 외국인계약자세 ("FCWT")

- 보세창고 내 가공품 판매에 대한 FCWT
- 한국에 입찰 서비스로 인한 소득에 대한 FCWT

### 무역 & 관세

- 사용 목적 변경에 따른 수입품에 대한 관세가치 결정
- 수출제조를 위한 수입품에 대한 관세 면제 조건
- 외국 공급자에 반품하기 위해 수입후 재수출된 물품에 대한 초과 납부된 VAT 처리
- 미얀마 및 필리핀은 RCEP 관세를 적용받은 국가리스트에 추가됨.

#### Contact

Website: [deloitte.com/vn](https://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mailto: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Transfer Pricing  
Firm of the Year

Tax Firm  
of the Year



## 법인소득세 ("CIT") 지침 문서

### 확장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CIT 인센티브

회사가 투자 프로젝트를 인수하고 프로젝트에 대한 소유권을 전환 받은 후 프로젝트 확장할 경우 회사가 규정조건을 충족하면 확장 투자 활동으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CIT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2015년 7월 1일 (투자법의 시행일) 이후 투자허가서를 부여 받은 확장 투자 프로젝트는 특별소비세 ("SCT") 과세대상인 상품을 생산하는 경우, 이러한 확장 투자 프로젝트에서 생산된 SCT 과세 상품에 대한 소득은 CIT 인센티브를 적용 받을 수 없다.

(세무총국의 2023년 11월 15일 제5115/TCT-CS호 OL)

### 납부한 수입관세는 손금산입 가능함

관세 당국의 과세 결정에 따라 납부된 수입관세 금액은 규정조건을 충족하면 CIT 목적상 공제 가능한 비용으로 처리된다.

(Binh Duong 세무국의 2023년 10월 10일 제23684/CTBDU-TTHT호 OL)

### 투자 프로젝트를 통해 자본을 출자하는 회사는 해당 프로젝트의 CIT 인센티브 권리와 의무를 상속받을 수 있음

회사가 다음과 같은 투자 프로젝트를 통해 자본을 출자하는 경우:

- CIT 인센티브를 받은 프로젝트의 투자 정책, 규모, 분야, 위치가 변경되지 않음
- 진행중인 프로젝트에 적용되는 CIT 인센티브가 영향을 받지 않음, 및
- 규정조건을 충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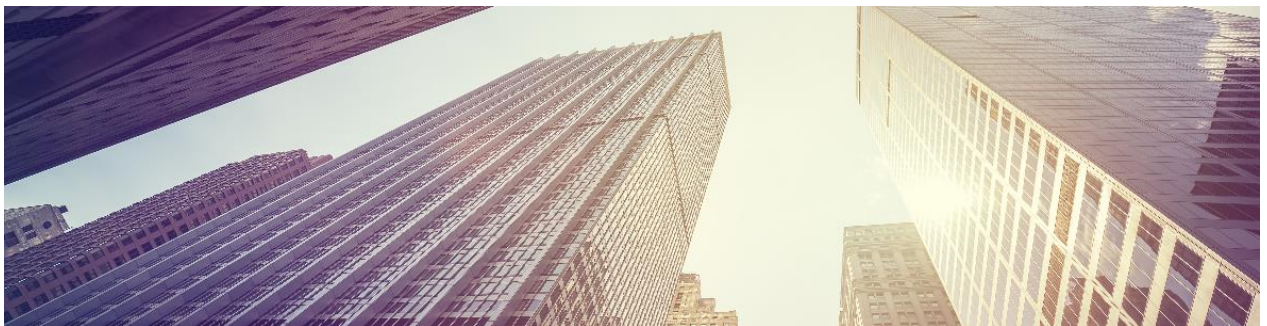
회사는 CIT 인센티브를 적용 받은 투자 프로젝트 수행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상속 받을 수 있다.

(동나이 세무국의 2023년 10월 27일 제12405/CTDON-TTHT호 OL)

### 연체이자 비용은 손금산입 가능함

상품 매매 계약 조건에 명시된 결체연체이자에 대한 비용은 CIT 계산 목적으로 공제 가능한 비용으로 처리된다.

(Binh Duong 세무국의 2023년 12월 5일 제32079/CTBDU-TTHT호 OL)



### Contact

Website: [deloitte.com/vn](https://www.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mailto: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 간접세 (“VAT”) 지침 문서

### 후원금 수령시 계산서 발행

회사가 수리, 보증, 프로모션 및 광고 등의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 단체 또는 개인한테서 후원금을 받을 경우 규정에 따라 후원자에게 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하노이 세무국의 2023년 11월 30일 제84347/CTHN-TTHT호 OL)*



### Contact

Website: [deloitte.com/vn](https://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mailto: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 개인소득세 ("PIT") 지침 문서

###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에 대한 PIT

회사는 외국인 근로자가 귀국한 후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 노동법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금은 PIT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 노동법에 규정된 기준을 초과하여 지급된 퇴직금에는 PIT가 적용된다. 회사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전에 비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고정세율 (20%)에 따라 PIT를 징수한다.

(박닌성 세무국의 2023년 10월 31일 제5046/CTBNI-TTHT호 OL)

### 수수료에 대한 PIT

회사가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참여하는 개인인 국내 판매자에게 판매량 기준으로 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 연간 VND 100 mil 미만인 수수료 소득이 있는 개인 사업자의 경우 기한 내에 세금 신고서를 제출할 책임이 있지만 VAT 와 PIT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 연간 VND 100 mil 이상인 수수료 소득이 있는 개인 사업자의 경우 규정에 따라 VAT 와 PIT를 신고, 납부할 책임이 있다.
- 사업가가 아닌 개인이 받은 수수료 소득의 경우 근로소득으로 간주된다. 회사는 회당 VND 2 mil 이상으로 개인에게 소득을 지급하기 전에 PIT 10%로 세금을 공제할 책임이 있다.
- 회사가 3개월 이상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이런 수수료를 직원의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PIT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회사는 규정에 따라 PIT를 원천징수할 책임이 있다.

(롱안성 세무국의 2023년 11월 3일 제4346/CTLAN-TTHT호 OL)

### Contact

Website: [deloitte.com/vn](https://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mailto: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 외국인계약자세 (“FCWT”) 지침 문서

### 보세창고 내 가공품 판매에 대한 FCWT

베트남에 고정 사업장이 없는 외국 기업은 베트남 보세창고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여 소득을 얻을 경우 FCWT가 과세된다. 이는 상품이 원래 국내에서 수입되거나 다른기업에 의해 가공된 경우에도 적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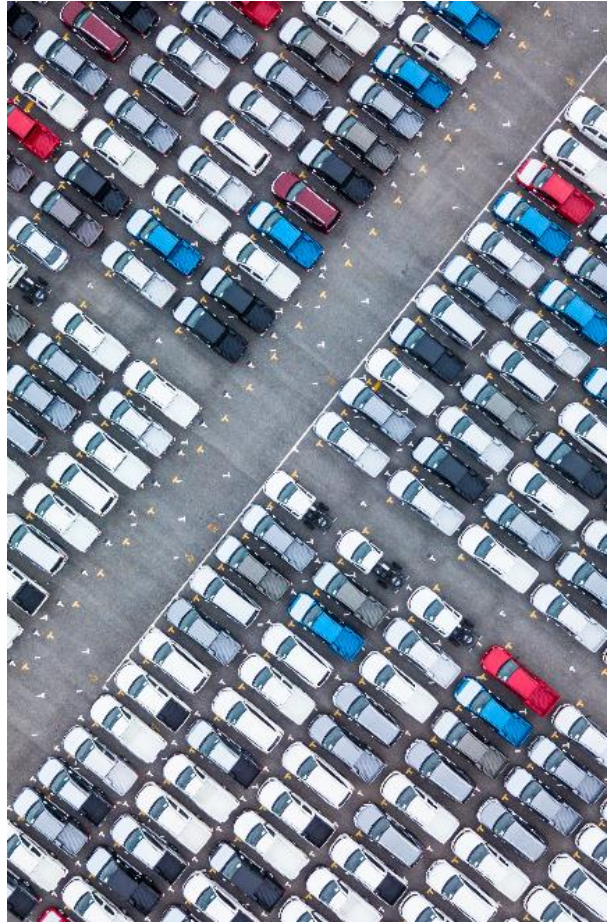
외관 창고로부터의 배달 활동은 국제 운송, 환승, 보관 또는 다른 기업의 가공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활동이 아니다.

*(Binh Duong 세무국의 2023년 10월 10일 제/23679/CTBDU-TTHT 호 OL)*

### 한국에 입찰 서비스로 인한 소득에 대한 FCWT

회사가 한국에서 입찰서류 및 법적절차를 준비하기 위해 한국에 컨설팅 회사의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 베트남영토밖에 제공 및 소비되는 상기 법률 컨설팅 서비스로 인한 소득은 FCWT의 과세대상이 아니다.

*(Long An 세무국의 2023년 11월 10일 제/4436/CTLAN-TTHT 호 OL)*



### Contact

Website: [deloitte.com/vn](https://www.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mailto: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 무역 & 관세 지침 문서

### 사용 목적 변경에 따른 수입품에 대한 관세가치 결정

관세총국의 관점에 따르면, (이전에 면세된 목적대비) 사용목적이 변경된 수입품에 대한 관세가치는 은 수입 시 신고된 가치로 결정한다.

관세총국은 신고된 금액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할 근거가 있을 경우, 관세 신고 가치는 제39/2015/TT-BTC호 시행규칙 (제60/2019/TT-BTC호 시행규칙에서 수정 및 보완됨) 명시된 관세 평가 방법에 따라 실제 수입품과 적합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사용목적 변경에 따른 납부세금을 산정하기 위해 수입원자재의 평균 단가 (기업 설립 시점부터 현재까지)를 적용하자는 제안이 현행 법규정에 맞지 않는다.

(관세총국의 2023년 10월 6일 제 5186/TCHQ-TXNK 호 OL)

### 수출제조를 위한 수입품에 대한 관세 면제 조건

관세총국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

- 업체는 베트남 영토에 생산시설에서 수출품을 제조하기 위한 생산시설; 기계 및 장비에 대한 소유 또는 사용 권리가 없는 경우; 또는
- 업체는 베트남 영토에 다른 조직/개인에게 모든 수입품을 맡겨 모든 제조/가공 단계를 아웃소싱한 후 완제품을 수령하여 수출하는 경우

제134/2016/ND-CP호 시행령의 제12.2조 (제18/2021/ND-CP호 제 1.6조에서 수정 및 보완됨)에 의한 규정에 따른 수출 제조 활동에 대한 관세면제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관세총국의 2023년 11월 17일 제5980/TCHQ-TXNK호 OL)



### Contact

Website: [deloitte.com/vn](https://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mailto: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 무역 & 관세 지침 문서

### 외국 공급자에 반품하기 위해 수입후 재수출된 물품에 대한 초과 납부된 VAT 처리

관세총국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

- 회사가 수입품에 대한 VAT를 납부한 후 외국 공급자에 반품하기 위해 재수출한다; 및
- 수출 관세 신고서는 2018년 1월 2일 (제146/2017/ND-CP호 시행령의 시행일)이후 등록되었다,

관세당국은 초과 납부된 세금을 처리한다.

초과 납부된 수입 VAT는 수입 관세 (있는 경우)와 동시에 처리된다.

(관세총국의 2023년 11월 23일 제6068/TCHQ-TXNK호 OL)

### 미얀마 및 필리핀은 RCEP 관세를 적용 받은 국가리스트에 추가됨.

2023년 12월 1일에 정부는 미얀마와 필리핀을 포함한 아세안 2개국에 2022-2027년 기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에 따른 관세의 적용일정을 안내하는 제84/2023/ND-CP호 시행령을 발행했다. 따라서:

- **미얀마:** 2022년 3월 4일부터 공식적으로 RCEP 관세 적용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 2022년: 2022년 3월 4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2023년: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필리핀:** 2023년 6월 2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RCEP 관세 2023을 공식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본 시행령은 2023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다음과 같은 수입품:

- 미얀마에서 수입되며 2022년 3월 4일부터 2023년 12월 1일 이전 수입 관세 신고서가 등록된 수입품;
- 필리핀에서 수입되며 및 2023년 6월 2일부터 2023년 12월 01일 이전 수입 관세 신고서가 등록된 수입품;

수입품은 RCEP 관세를 적용한 규정조건을 충족하고 회사가 실제로 더 높은 관세율 (RCEP 관세율에 비해)로 세금을 납부했을 경우 관세당국이 현행 조세관리규정에 따라 초과 납부된 세금을 처리한다.

(정부의 2023년 12월 1일 제84/2023/ND-CP호 시행령)

### Contact

Website: [deloitte.com/vn](http://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mailto: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 Contact Us



**Thomas McClelland**  
National Tax Leader  
+84 28 7101 4333  
tmcclelland@deloitte.com



**Bui Ngoc Tuan**  
Tax Partner  
+84 24 7105 0021  
tbui@deloitte.com



**Bui Tuan Minh**  
Tax Partner  
+84 28 7105 0022  
mbui@deloitte.com



**Phan Vu Hoang**  
Tax Partner  
+84 28 7101 4345  
hoangphan@deloitte.com



**Dinh Mai Hanh**  
Tax Partner  
+84 24 7105 0050  
handinh@deloitte.com



**Vo Hiep Van An**  
Tax Partner  
+84 28 7101 4444  
avo@deloitte.com



**Vu Thu Nga**  
Tax Partner  
+84 24 7 105 0023  
ngavu@deloitte.com



**Tat Hong Quan**  
Tax Partner  
+84 28 7101 4341  
quantat@deloitte.com



**Vu Thu Ha**  
Tax Partner  
+84 24 710 50024  
hatvu@deloitte.com



**Dang Mai Kim Ngan**  
Tax Partner  
+84 28 710 14351  
ngandang@deloitte.com



**손원식 회계사**  
+84 93 445 6850  
wonsikson@deloitte.com



**이상근 회계사**  
+84 901 197 014  
keunslee@deloitte.com



**Bob Fletcher**  
Director, Trade and Customs  
+84 28 7101 4398  
fletcherbob@deloitte.com

### Hanoi Office

15<sup>th</sup> Floor, Vinaconex Building,  
34 Lang Ha Street, Dong Da District,  
Hanoi, Vietnam  
Tel: +84 24 7105 0000  
Fax: +84 24 6288 5678

### Ho Chi Minh City Office

18<sup>th</sup> Floor, Times Square Building,  
57-69F Dong Khoi Street,  
District 1, Ho Chi Minh City, Vietnam  
Tel: +84 28 7101 4555  
Fax: +84 28 3910 0750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http://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are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 About Deloitte Vietnam

In Vietnam, services are provided by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each of which may be referred to or known as Deloitte Vietnam.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 DTT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